

#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6.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공포(2007. 1. 2, 조례 제641호)됨에 따라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생활보장팀의 소속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었으나, 2007. 2. 15일 생활보장팀 소속부서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수입금출납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

- 생활보장팀 소속부서 변경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

### 나.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

## 3. 개정근거

- 1)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의료급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p>	<p>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u>에 의한 <u>서울특별시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의료급여법시행규칙</u>」 제28조제3항에 따른 <u>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u>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u></p>
<p>제3조(관리·운영등) ①회계는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u></p> <p>②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u>주민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u></p> <p>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2항의 규정</u>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p>	<p>제3조(관리·운영등) ① 회계는 <u>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u></p> <p>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u>주민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u></p> <p>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u>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p>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 1.~3. (생략)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상환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
- 6.~7. (생략)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급여비용의 대불금
- 2.~5. (생략)
6. 기타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 1.~3. (현행과 같음)
4.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불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 6.~7. (현행과 같음)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불금
- 2.~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수입)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